제 2 2 3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2017.1.16.)

###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의안번호 제2017 - 2호

###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 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7. 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 13.

####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앰(안 제16조)
  - (법령 개정 전) 조례로 정하는 자
  - (법령 개정 후)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 ⇒ 현행 문구로는 조례로 명시된 자만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자"로 명확히 표현
  -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 나. 「양성평등기본법」의무사항 반영(안 제24조)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다.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순화(안 제8조, 제15조 ~ 제17조)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망실·훼손 ⇒ 없어지거나 훼손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의안번호 제2017 - 3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 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7. 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 13.

#### 2. 개정이유

○ 국정시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 등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별표 3)

○ 670명 → 676명(증 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 6명

- 현행: <u>599명(본청263명</u>, 의회11명, <u>직속기관100명</u>, 사업소48명, 읍39명, 면138명)

- 조정: <u>605명(본청266명</u>, 의회11명, <u>직속기관102명</u>, <u>사업소49명</u>, 읍39명, 면138명)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안은 국정시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으로 대형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의안번호 제2017 - 4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 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7. 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1. 13.

####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 관외출장 시 숙박비의 지역별 상한 기준액을 정함
-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 ⇒ 실비지급
-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공무워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현 행				개 정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은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5조제4호의2)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 반영 다.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합(안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15.1.6)에 따른 숙박비지급 기준 현실화 및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자치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나. 관외 출장 시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및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의 실비지급 등을 명문화 하였으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